

『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4월 1일

나. 발 의 자 : 박세진, 강승수, 권기만, 김성현, 김익수, 박주연,
손홍섭, 윤영철, 정하영, 허 복, 황경환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4월 4일

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 세 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는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 고취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2조).
- 공개대상의 공개방법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심사와 이를 위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.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대 회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, 구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 및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안의 목적(안 제1조), 공개대상(안 제2조), 공개방법(안 제3조), 예산낭비 등 심사(안 제4조), 성과금 지급(안 제5조)등 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구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는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,

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 및 제4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 부합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